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8. 12. 8.(토) / 총 4매(본문 3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영한, 서기관 박정혁, 사무관 정창대 • ☎ (044) 201-3497, 3514
보도일시		즉시 보도가능합니다.

종합·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 - 12월 7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종합·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「건설산업기본법(이하 건산법)」 일부개정법률안*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* 업역규제 폐지 등 생산구조 혁신(윤관석 의원, 11.7 발의) + 하도급 정보공개 의무화 등 영세업체 보호 등(박덕흠 의원, 11.9 발의)

○ 종합·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*는 '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,

* 복합공사(원도급)는 종합건설, 단일공사(하도급)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(건산법 16조)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

○ 공정경쟁 저하, 폐이퍼 컴퍼니 증가,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*가 있었으나,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.

*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('99), 건설 선진화전략('04), 건설 선진화방안('09) 등

□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, 일자리, 건설 기술,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「건설산업 혁신방안」을 수립(6.28, 경제장관회의)하고,

○ 11월 7일에는 업역, 업종,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「혁신 로드맵」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**종합·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**을 통한 **합의**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.

○ 국토부는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**업역규제 개선(안)**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**입안 단계부터** 업계, 노동계,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**협의체***를 구성하고,

* 건설산업혁신위원회(위원장: 1차관·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) 운영('18.4~)

○ **종합·전문 상호시장 진출요건,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 핵심쟁점**에 대해서는 **노사정 선언(7.25, 11.7)**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**합의를 명문화**하는 등 입법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**이견 해소**에 주력해왔다.

□ 이에 따라 **종합·전문건설협회도**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 되는 등 **긍정적 변화**가 기대된다는 **공식적 환영 입장***을 밝혔다.

* 건산법 개정 관련 종합·전문건설협회 보도자료 배포(12.7.)

○ **업계**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**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**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,

○ 이제 산업혁신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**산업 육성과 건설 경기 활성화**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.

□ **건산법 개정**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'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**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**에서 **종합·전문간 상호경쟁**이 **가속화**될 것으로 전망되며,

* ('21) 공공공사 → ('22) 민간공사 순으로 **종합·전문 상호시장 개방**

○ 발주자의 **건설업체 선택권** 확대로 건설업계도 **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**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**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** 등 '**깜깜이 입찰***'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.

* 공사물량, 공기 등 필수정보의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하는 불공정 행위

□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,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**건설법 개정(안)**도 의결되어 **공공공사의 체불이**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.

* 발주자 직불 의무화, 불법하도급 5년 3회 등록말소 등(강훈식 의원, 1.26발의)

○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·수령이 예외 없이 **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***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,

* 건설업자는 자기 몫의 공사대금만을 인출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의 임금 등은 송금만 가능한 시스템(예: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, 서울시 대금e바로 등)

○ 법률개정에 앞서 '18년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현장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선도적으로 **전면 적용**한 결과,

○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**추석 체불현황 점검**(2,856개 현장 전수 조사)에서 **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발생해왔던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1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.**

* ('18) 설 92억원, ('17) 설 93억원, 추석 109억원, ('16) 설 223억원, 추석 176억원

□ 아울러 **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 강화**(계약건별 보증→ 현장별 일괄보증),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**시공능력평가 우대 조치** 등,

○ 정부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「**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**」의 **후속 입법조치가** 금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마무리됨에 따라, **건설산업 종사자의 근로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.**

□ **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** “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**혁신 노력**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**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.**”라며,

○ “**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.**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정창대 사무관(☎ 044-201-35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강훈식 의원(안): 11.29일 통과(일자리대책 후속조치)

- (발주자 직불제)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'전자조달시스템' 사용의무 부과
- (공공공사 하도급 제한) 임금체불, 불법외국인 고용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제한
- (노무관리별점제) 원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소홀, 산재예방 조치 미흡 등에 별점을 부과하고 별점누적 시 과태료, 과징금 부과
- (타워크레인 적정성 심사)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대여계약 적정성(대여금액 적정성, 미숙련 인력고용, 장비의 노후도 등) 심사제 도입
- (기타) 고용 우수기업 우대, 불법 하도급 3진 아웃제(5년 3회 위반시 등록말소),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방식 전환(건별→일괄) 등

2 윤관석 의원(안) + 박덕흠 의원(안): 12.7일 통과(혁신방안 후속조치)

- (종합·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)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,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
 - 전문업체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복합공사 도급, 종합의 단일공사 원하도급을 허용('21. 공공공사→'22. 민간공사)
 - * 전문컨소시움에 의한 복합공사 도급은 '24년부터 허용
 -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,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'24년부터 허용
- (하도급 입찰정보 의무공개) 수급인이 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에 필요한 정보*를 공개하도록 의무화
 - * (민간) ①설계도면, ②물량내역서, ③공사기간, (공공) ①,②,③ + 예정가격
- (기타) 직접시공 의무제 준수여부 산정기준 강화*,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점검방식 개선** 등
 - * 원청 노무비/ 총노무비 / ** 기술인협회 DB→ 고용보험 납부정보(고용정보원)